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의안 번호	2200
----------	------

2024. 12. 17.
주택공간위원회

I.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 10. 16. 박승진 의원 발의
- 회부일자: 2024. 10. 18.
-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7회 정례회 제5차 주택공간위원회 (2024. 12. 17. 상정·의결)

II. 제안설명 요지 (박승진 의원)

1. 제안이유

- 건축법 개정('24. 6. 18.)으로 이행강제금 감경비율이 50%에서 75%로 상향 조정되어 조례 위임사항에 대해서도 동일한 감경비율을 적용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재난, 재해 등으로 긴급조치를 위해 건축된 건축물은 이행강제금 감경비율을 75%로 상향 조정함(안 제45조제4항)

Ⅲ. 검토보고 요지 (윤은정 수석전문위원)

- 이 개정조례안은 이행강제금과 관련하여 건축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45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생략) 1. ~ 5. (생략) ② ~ ③ (생략) ④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재난·재해 등으로 긴급조치를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을 말한다. 이 경우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의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45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100 분의 75-----.

- 당초 「건축법」 제80조의2제1항제1호¹⁾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4제1항제7호²⁾ 상,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에 따라 감경항목 및 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올해 6월 법령상의 감경비율이 100분의 75로 상향되었음.

1) 「건축법」 제80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① 허가권자는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축사 등 농업용·어업용 시설로서 50제곱미터(「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5분의 1을 감경
2. 그 밖에 위반 동기, 위반 범위 및 위반 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8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감경

2) ①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6의2. (생략)
7.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 동기 및 공중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감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 이에,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45조제4항에서는 재난·재해 등으로 긴급조치를 위한 건축물에 한하여, 현행 100분의 50을 감경하던 것을, 개정된 법령에 따른 최대범위인 100분의 75로 상향하려는 것으로, 긴급 조치라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됨.
- 참고로, 현재 서울시 내 재난·재해 등으로 긴급조치를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 및 이행강제금 감경 부과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³⁾.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3) 25개 자치구에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개정을 위한 현황자료 요청(건축기획과-8126, 2024.10.16.)’ 회신 결과, 재난·재해 등으로 긴급조치를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 현황 및 이행강제금 감경 부과 내역이 없는 것으로 파악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4항 중 “100분의 50으로”를 “100분의 75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5조(이행강제금의 부과)</p> <p>① ~ ③ (생략)</p> <p>④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재난·재해 등으로 긴급조치를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을 말한다. 이 경우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의 비율은 <u>100분의 50</u>으로 한다.</p> <p>⑤ ~ ⑦ (생략)</p>	<p>제45조(이행강제금의 부과)</p> <p>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 ----- ----- -- <u>100분의 75</u>로 한다.</p> <p>⑤ ~ ⑦ (현행과 같음)</p>